

대전지방법원 2024. 10. 30 선고 2024가단4473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4. 10. 16.

판결 선고2024. 10. 3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명도할 부분 2층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⑦, ⑧, ①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, 나, 다, 라, 마 부분 중 ②, ③, ⑥, ②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"라" D호 부분 23.52㎡를 인도하고,
나. 2023. 8. 3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나. 피고 C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윤종섭

별지